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9. 13.

다. 상정일자: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9.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가. 제안이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잘못된 용어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피한정후견인 관련 규정 삭제 및 사후적 해촉 사유 신설(안 제5조)
- 2) 동물보호센터 감독에 관한 근거 법령 등 오류 정정(안 제9조)
- 3)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기준의 근거조항 오류 수정(안 제15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와 동물학대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시 그 결격사유 중 일부 조항이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이를 상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적 근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0항**(동물복지위원 결격사유) 제1호의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동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르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포괄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는 동 규정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1)와도 상충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주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시도이며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1항).

-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1항에 위원 해촉사유로 ‘질병·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1)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 준수여부, 유기동물의 건강 등 관리상태 점검 근거조항 오류를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을 ‘제15조제4항’으로 정정하고 있고,
- **안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역시 유기동물의 반환 또는 보호조치에 소요 되는 경비의 산정기준 근거조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음.
- 그 밖에, **안 제5조제2항, 3항, 4항, 8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조문을 간결하게 다듬어 구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개정취지에 동의함.
- **안 제5조제12항**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2)와 중복 명기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을 위반함이 없고 입법 체계 측면에서도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2) **제13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